

● **환경부고시제2017-92호**

2017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7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5 월 8 일

**환 경 부 장 관**

201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0.9767로 한다.

2017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0.9767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